HLB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4.0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 투명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에 거래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세부 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내부거래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 또는 결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장. 구성

제6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까지로 한다.

⑤ 중도 퇴임 등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차기 이사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구성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8조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소집시 그 소집일자를 결정한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성립 및 결의)

①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

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및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장 부의사항

제12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는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 투명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형자산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포함한다.
4. 특수관계인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가 한도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